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한국법제연구원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이라 함) 제11조제6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

1. 연구원 채용전형에 최종 합격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연구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연구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 서식)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recruit@klri.re.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본인 확인 후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할 예정입니다.
4. 「채용절차법 시행령」 제4조 전단에 따른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붙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요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법제연구원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